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변경)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거나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자(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실제 참여한 경우 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하도록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대상이 변경됩니다.

구분	당 초	변 경
교육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 참여자	· 건설공사 : 현장대리인 · 설계 등 용역 :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포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이수기한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3년 마다

다만,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학적 인정범위 및 취득 방법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국도해양부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교육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별표3

○ 시 행 일 : 2010. 12. 30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신설)

품질관리자도 최초교육(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및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종류	교육대상 및 이수기한	교육기간
최초교육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3년이내	기본교육 2주 전문교육 2주
승급교육	품질관리자로서 일정한 자격·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1주
계속교육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부터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주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2010.12.30일 이전)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교육의 기본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65조제2항 별표3

○ 시 행 일 : 2010. 12. 30

※ 개정법령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ocea.or.kr>) 교육정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